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가단6752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4. 4.

판결 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11,228,194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614,0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5. 2.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 1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5%,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A 벤츠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운전자 C, 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D QM5차량(운전자 E, 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① F은 2016. 12. 31. 00:4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제한속도 70km/h)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빠른 속도로 고현 쪽에서 통영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 곳은 커브 구간이 연속되는 도로이고,야간이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로 통영 쪽에서 고현방면으로 마주 걸어오던피해자 I 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져 올라 몸이 회전되면서 두부로 전면유리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로 추락해 있던 상태에서 ② C 운전의 피고 1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발을 차량 차체 하부로 밟고 지나갔고, 3J(운전자 K) 차량 및 L(운전자 M) 차량이 재차 역과하였으며, 이후 약 3분가량이 경과 한 후 ④ E이 운전한

피고 2차량이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는 2016. 12. 31. 02:55경 이전에 심한 두부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가1 내지 3호증, 을나1호증의1, 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위 피고들 피보험차량의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주의의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연이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과실은 40%, 원고차량 및 후행차량의 각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가 50%, 피고 1, 2차량을 포함한 후행차량 4대의 운전자가 각 12.5%이라고 주장하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공동 면책시킨 이상 위 피고들은 그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건대, 원고차량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으로 튕겨지면서 몸이 회전하여 두부로 전면유리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고 그 후 재차 도로로 추락하여 쓰러진 피해자는 이미 그 생존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두분에 심한 손상을 입어 자신을 몸을 이동할 여력이 없었거나 원고차량과 부딪힌 사고로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차체 하부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피고 1차량의 역과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피고 1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2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80% 이상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참작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③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80% 이상이고, 후행차량 중의 하나인 피고 1차량 운전자의 부담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속,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조치 불이행 및 후속차량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등을 아니한 탓으로 발생한 것으로 모든 배상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 2차량은 원고 차량을 포함한 선행차량 4대가 진행한 후 5번째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2차량 운전자가 역과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또는 상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심야에 차로의 중앙부분을 무단 횡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최초의 사고 후 후행차량들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차량과 피고 2차량의 운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고, 그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그 부담부분 이상의 출재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피해자와 관련한 부담부분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부분, 쌍방의 과실내용과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비율은 원고차량 70%, 피고 1차량 10%, 피고 2차량 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앞서 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도 심야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차로 중앙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할 책임은 30%로 제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손해 : 장례비 1,500,000원 (500만원×0.3)

② 소극적 손해 : 70,781,942원 (= 2,197,404원 × 161.0581 × 2/3 × 0.3) 망인은 1976. 3. 15. 생(사고당시 만 40세)의 여자로서, 가동기간 만 60세, 소득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197,404원이므로 생계비 1/3을 반영하고 망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③ 위자료 : 40,000,000원

④ 합계 : 112,281,942원

2) 원고가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게 운전자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11,228,194원 (= 112,281,942원 × 10%),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5,614,097원 (= 112,281,942원 × 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